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 박 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5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3

I. 개 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 정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7.

(3) 회 부 일 : 2024. 6. 2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있으나,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대규모유통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1조 등).

II. 검토의견: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 ☐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 임명·위촉 등 관련 규정¹⁾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분쟁조정협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u><신설></u>	제20조(분쟁조정협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u>
<u><신설></u>	③ <u>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
②·③ (생략)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u>	⑥ <u>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u> <u>-----임명 또는</u>

현행	개정안
<u>나</u> 위촉한다. 1. ~ 4. (생략) ⑤ <u>위원장은</u>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u> ⑥ ~ ⑩ (생략)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생략) ②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u>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협회의 회의) ① ~ ⑤	<u>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시·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u> 1. ~ 4. (현행과 같음) ⑦ <u>조정원 협회의 위원장은-----</u> -----<u>위촉하고, 시·도 협회의 위원장은</u>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u>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⑧ ~ ⑫ (현행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위원장 및 시·도지사는-----</u> ----- ----- ----- -----. 제22조(협회의 회의) ① ~ ⑤

현행	개정안
(생략) ⑥ 협회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u>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생략) 제25조(조정신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③ 협회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	(현행과 같음) ⑥ ----- ----- ----- -----<u>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도지사가</u>-----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조정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회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여러 협회회에 중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협회회 중 <u>납품업자등이 선택한 협회회에서</u> 이를 담당한다. 1. <u>조정원 협회회</u> 2. <u>대규모유통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회회</u> 3. <u>납품업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회회</u> ④ ----- ----- -----

현행	개정안
에게 알려야 <u>한다</u> .	----- <u>하며 조정원 협의회</u> <u>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u> <u>·도 협의회</u> 의 경우 <u>공정거래위</u> <u>원회 및 시·도에 이를 통지하</u> <u>여야 한다</u> .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4항 단서의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 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 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 ----- ----- ----- -----.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⑦ 제5항-----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26조(조정 등) ① ~ ⑥ (생 략)	제26조(조정 등)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협의회는 제4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 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 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u> <u>회에</u>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	⑦ ----- ----- ----- ----- ----- <u>조정원 협의회</u> 의 경 <u>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u>

현행	개정안
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회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20조²⁾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³⁾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적극적 이용에 한계가 있고, 유사

- 1)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①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위촉권(안 제20조제6항·제7항), ②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지명권 부여(안 제22조제6항), ③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안 제21조제2항), ④ 서로 다른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의 처리(안 제25조제3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 2) 제20조(분쟁조정협회의의 설치 및 구성) 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거래 분야인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거래⁴⁾⁵⁾의 경우 시·도에 설치된 협의회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어 납품업자등과 대규모유통업자에게도 동일한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위원 임명·위촉 등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재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조정원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납품업자등의 소재지가 지방이 65.5%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를 경우 분쟁조정을 이용하려는 당사자들의 편의를 돕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회의 설치) ①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5) 2017년 12월 개정 논의 당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시·도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만 의결하였음(2018년 3월 27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1일 시행).

**<신청인(지역 납품업자) 및 피신청인(지역 대규모유통업자)
소재지 현황>**

(단위: 건, %)

구 분		접수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청인	서울	13	40.6	13	42.0	14	45.1	13	46.4	10	34.5
	지역	19	59.4	18	58.0	17	54.9	15	53.6	19	65.5
피신청인	서울	23	71.9	27	87.1	23	74.3	21	75.0	23	79.3
	지역	9	28.1	4	12.9	8	25.7	7	25.0	6	20.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또한,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협의회의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이 적거나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 시·도 협의회의 의무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한인 60일 보다 빠른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있어 현재도 신속한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조정원 협의회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건, 일)

구 분		접수현황	처리현황 및 유형				
		계	계	성립	불성립	중지*	평균처리기간
2020	계	3,008	2,972	1,308	411	1,253	49
	공 정	976	932	309	97	526	49
	하도급	897	955	472	164	319	51
	가 맹	514	499	176	71	252	45
	대규모유통	31	37	22	2	13	48
	대리점	80	70	34	8	28	72
	약 관	510	479	295	69	115	44
2021	계	2,894	2,936	1,156	392	1,388	49
	공 정	1,054	1,054	337	129	588	51
	하도급	855	863	386	128	349	47
	가 맹	490	483	165	62	256	43
	대규모유통	31	25	9	3	13	54
	대리점	71	84	34	10	40	78
	약 관	393	427	225	60	142	50
2022	계	2,846	2,868	1,202	339	1,327	42
	공 정	1,085	1,119	423	148	548	45
	하도급	901	853	361	95	397	43
	가 맹	489	513	230	54	229	41
	대규모유통	28	34	21	1	12	46
	대리점	86	78	26	14	38	48
	약 관	257	271	141	27	103	31
2023	계	3,481	3,151	1,278	350	1,523	47
	공 정	1,372	1,267	475	135	657	44
	하도급	1,044	929	354	100	475	48
	가 맹	605	575	263	62	250	44
	대규모유통	29	26	13	1	12	39
	대리점	92	76	36	4	36	78
	약 관	339	278	137	48	93	53

* 조정절차 중지: 소제기, 신청취하, 각하, 자료 미제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종료한 경우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다음, 법률상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업종별 거래 관행, 시장상황 등의 전문적인 판단요소를 중

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 시·도가 각각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조정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 제도의 공정성·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은 ① 공정위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안 제20조제3항), ② 협의회를 조정원 협의회와 시·도 협의회로 구분하여 분쟁조정 신청 및 각하·종료 사실의 통지(보고) 대상을 정비(안 제25조제4항·제26조제7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각 시·도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조정원 협의회나 분쟁당사자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에 선택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바,

각 협의회가 표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각 협의회의 임의적 운영에 따른 분쟁당사자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따라서 공정위와 시·도가 복잡·다기한 분쟁조정의 현황과 내용을 신청단계부터 각하·종료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므로 공정위가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분쟁조정 신청사항의 통지대상을 분쟁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정원 협의회인 경우 공정위에, 시·도 협의회인 경우 공정위 및 시·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분쟁조정 신청의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위와 시·도가 분쟁조정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아래 사항에 관한 체계·자구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첫째, 안 제25조제4항은 협의회가 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용어의 통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⁶⁾.

6)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등 유사입법례와 법 문언을 통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 ----- ----- -----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 신청 등) ④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정 신청 등) 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당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원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협의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이를 알려야 한다.

- 둘째, 안 제25조에는 분쟁당사자가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납품업자’가 선택한 협의회가 해당 분쟁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은 납품업자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⁷⁾, “납품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시·도 협의회 의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20조제6항는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도 협의회를 이미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만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개정⁸⁾⁹⁾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4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2023년 8월 8일 일부개정, 2024년 2월 9일 시행

9) 그간 시·도 협의회는 대개 조정원장이 추천한 자보다는 전문성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시·도지사가 대부분 임명해 왔다는 점, 현실적으로 조정원장이 시·도위원을 모두 추천하기에 곤란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를 살리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음.